

세월호 참사에 관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사회적 역할

김진성*

1. 서론
2. 진실에 다가가기
3. 문제를 개선하기
4. 기록하고 잊지 않기
5. 결론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

▪투고일 : 2015년 3월 16일 ▪최초심사일 : 2015년 3월 23일 ▪게재확정일 : 2015년 4월 16일.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기록정보관리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사회 각 분야와 그 구성원들은 이런 사건 자체와 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가 부여하거나 자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경우 관련 기록정보를 모으고, 운영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기록정보는 어떤 일을 되짚어 생각하거나 분석하여, 반성하고 보완하는 수단이자 이에 작용할 도구이기도 하다. 기록정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자동적으로 관리되지는 않으며, 목적의식을 가져야 생산·관리된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와 기록정보관리 분야가 문제해결 방향과 역량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적극적인 결함 및 조력은 1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고 공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2차적으로는 특정한 분야의 기록정보가 더 잘 만들어지고 활용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전문적인 역량과 감정을, 가장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

주제어 : 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안전점검, 재난대응, 조사위원회, 증거적 가치, 기록정보 생산·관리체계 개선, 추모 기록, 피해자기록, 사회적 기록화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자 그대로 보면 참사는 참담한 사고·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이면서, 주로 규모가 대단위이거나 사회적인 여파가 큰 경우에 사용한다. 유사 이래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연재해와 인재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대다수 개인들은 슬퍼하고, 분노하고, 냉소하고, 회피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와 그 구성원들은 이런 사건 자체와 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가 부여하거나 자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경우 관련 기록정보¹⁾를 모으고, 운영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다수의 사상자, 실종자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이하 세월호 침몰사고)와 이를 비롯해서 1주기가 가까워진 현재까지 종료되지 않은 사건 일체(이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기록정보관리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세월호 참사는 '비극적인 사건'이면서 현대 한국사회가 가진 구조적 모순과 한계가 드러난 표식이기도 하다. 지난 20여 년간만 해도 서해훼리호 침몰, 서울 성수대교 붕괴,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화성 씨랜드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등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했으며, 대부분 안전의식 부족, 제도적 불비, 관련 예산 및 인력의

1)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민간에서 발생한 정보콘텐츠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기록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미비라는 공통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록정보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기록정보는 어떤 일을 되짚어 생각하거나 분석하여 반성·보완하는 수단이자 이에 작용할 도구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며’ 이러한 문제 지점을 극복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2) 관련 선행활동 분석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관련 선행활동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기록화 활동과 향후 과제에 집중한 분석 및 제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록화 활동의 경우 침몰사고 직후 전문가 개인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참여를 모색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윽고 기록정보관리 분야 공식 단체 차원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며 참사 기록 전반에 대한 요청²⁾, 추모기록 및 피해자기록의 수집·보존, 구술기록화³⁾ 및 영상기록화 및 르포르타주 기록화, 기억저장소 조성 및 전시, 기록관리시스템 기증 등이 이어졌다.⁴⁾ 이러한 능동적인 기록화 활동은 기록정보관리 전문가가 돌발적인 사회적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면해서⁵⁾, 기록정보관리의 범위와 방법론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이다.⁶⁾

2)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세월호 참사 기록의 철저한 관리와 즉시 공개를 촉구한다」, 2014. 5. 12.

3) 해당 구술기록화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는 2014년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의 송주형 발표문을 참조.

4) 심성보, 「사회적 기록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2014년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 안병우, 「기록학의 확장 and 아키비스트의 역할」, 『한국기록학회 제 100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2014.

5) 기록전문가의 경험과 성장에 대해서는 2014년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의 오윤택, 황광석 발표문을 참조.

6) 기록화 활동의 내역과 의미에 대해서는 같은 자료집의 홍영의, 김진열, 권용찬의 발표문을 참조.

한편으로 침몰사고 자체 및 참사 전반에 대한 향후의 증점 추진과제를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전진한⁷⁾은 침몰사고의 원인과 배경에 관해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유관기관에서 이미 공개중인 기록정보의 내용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여객선 출항시의 부실한 안전점검 실태, 여객선 선령의 연장과 여객선 사고 증가의 연관성, 이전부터 대형해양사고가 우려되고 있었음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과 유관기관의 유착, 정보은폐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였다. 심성보⁸⁾는 참사 증거 기록으로 세월호 선체 이력, 출항 준비과정, 출항부터 침몰 직전까지의 운항기록, 사고 직후 72시간—골든타임—상황기록, 수색 종료 선언까지의 구조기록, 선체 인양과정 기록, 세월호 선체 자체가 수집·분석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추모기록의 수집 및 수집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모활동, 참사 전반에 대한 기록화 방식에 대해 제시했다. 김익한⁹⁾은 기록에 의한 기억이 참사에 대한 추모와 혁신의 의지를 영속시킬 수 있다면서 사회적 기억을 남기고 공유하는 기억저장소를 제안했다. 그 과정에서 신뢰성, 민주적 참여, 소통이라는 가치가 보호·강조되어야 함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자발적 수집 → 시민아카이브 네트워크 → 기억저장소와 추모전시관 설립이라는 시민 주체의 아카이브 구축을 주장했다.

2. 진실에 다가가기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 및 발단에서 결과까지의 세부적인 전개과정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기까지는, 그것을 공식화하려는 노력과 그것이 사

7) 전진한, 「세월호 참사와 시민의 알 권리」, 『한국여성신학』 79호, 2014.

8) 심성보, 「4·16 세월호 참사기록,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57호, 2014.

9) 김익한, 「세월호 기억 저장소를 만들자」, 『역사비평』 107호, 2014.

회적인 기억으로 정착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민간의 개인이나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나, 그보다 효과적인 것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구에 의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진실이 확정되는 것은 그 내용의 정확성, 전반적인 인지도 못지않게 국가(정부)의 공식화 역시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한국 근현대시기에 국가 및 반국가세력에 의해 일어났던 폭력적 조치에 대한 조사, 명예회복, 배·보상 심의, 피해자 지원, 재산 환수 등의 활동이 각종 정부위원회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사위원회로 통칭되는 이들 위원회는 2000년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설립을 시작으로 활동대상별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활동 자체가 사회적 (재)인식의 단초가 되었으며, 그 활동의 기록정보들이 집단적 기억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후 약 1년 동안 민간의 언론,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모임은 물론 대표적인 국가기구라 할 수 있는 검찰, 감사원 등에서 원인 및 책임소재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었으며¹⁰⁾ 일부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덕분에 새롭게 밝혀지거나 확인된 사실들이 적지 않지만, 검증되지 않거나 못한 부분들도 있으며, 밝혀진 사실조차 하나의 틀로 정리되지 않았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가 기본적인 구성을 마

10) 「세월호 72시간의 기록」, 세월호 침몰사고 타임라인, <past.media.daum.net/sewolferry/timeline> [인용 날짜: 2015. 2. 17]; 「세월호 참사, 진실과 기록」, 세월호 관련 뉴스타파 보도 및 자료모음, <http://newstapa.org/sewol/> [인용 날짜: 2015. 2. 18]; 「해의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국제워크숍 자료집, 2014.12;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검찰청 보도자료, 2014.10;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 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2014.10;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결과, 2014.12.

친 현재부터는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확립, 피해자 지원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활동은 세월호 참사 관련자 개인에 대한 책임소재 및 구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와 논리로써 그동안 제기된 사회적 논의에 일단락을 지우는 데에도 목표가 있다. 더 나아간다면 그동안 명시 또는 명시되지 않았던,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들을 파악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가 행정기구와 민간 사회경제주체의 활동이나 업무과정은 고도로 복잡하고 광범위해졌다. 이의 산물인 기록정보 역시 물리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산재되어 있기에 어떤 사안의 원인과 전개과정, 결과를 파악하는 것부터 어려운 것이 1차적인 난관이다. 비록 쉽지 않다고 해도 이러한 기록정보의 내용과 구성을 토대로 사안에 접근해야만 하기에¹¹⁾,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차원의 참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

첫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한 권고이다. 기록정보관리 전문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무슨 (공공)기록정보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에 대한 추정이나,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집·생산하여야 유효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조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에 대한 기본정보 파악, 해당 조직의 기록정보 생산·관리 현황—관련 법규, 세부 업무절차, 업무·기록정보 분류체계, 기록정보 생산¹²⁾·관리시스템—분석 등이 필요하며, 해당 기록정보를 입수하거나 재구성하는 방식, 조사업무 과정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수행 및 공개·공유와 그 결과의 안전한 보존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11) ‘증언’조차 기록정보의 형태일 경우에 재확인 및 교차비교가 가능하다.

12)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 문서시스템은 물론 행정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다음 장에서 언급하는 ‘항적 데이터세트’는 해양수산부의 행정정보시스템인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서 반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둘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식 활동에 대한 업무협조이다. 기록정보관리 전문가의 중요한 직무분야 중에는 이용자의 이용요구를 파악하여 제공하는 기록정보 이용서비스가 존재하며, 여기서의 이용자는 조직 내부 뿐 아니라 외부를 포함한다. 특별조사위원회가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정보조회, 자료요청, 방문면담 등을 수행¹³⁾할 시, 해당 조직의 기록정보관리 전문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응대 및 공증을 수행할 수 있다. 만일 해당 요청사항이 법적 또는 실무적 차원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매우 무리한 경우, 기계적인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협조적 자세를 견지하며 대안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특별조사위원회 일원으로서의 직접적인 참가이다. 앞의 두 경우는 외부에서의 간접적인 협력이므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고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체계적인 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 기록정보관리 전문가들이 자문위원 위촉, 공무원 파견, 전문용역 수행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특별조사위원회 내부에서 생산되는 기록정보를 직접 작성하거나 그 생산에 기여할 것이기에, 보다 엄밀하고 효율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의지가 요구될 것이다. 복잡한 국가기구 구조, 기록정보 생산·관리 관련 법규, 안전(민방위)/해운/형(사)법 등 관련 분야 법규, 다양한 기록정보 유형과 특성, 정보시스템 통제,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실무적용 역량과 함께 공정하고 균형 있는 기록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전문가 개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기록공동체 전반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이 요구된다.

13)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조사의 방법).

동 특별법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호(제44조)와 응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제53조)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3. 문제를 개선하기

공식적이고 상세한 진상규명이 진행되면서 해운업계 및 해운업 관리 기구, 해양 안전관리 기관 등을 중심대상으로 한 탈법적이고 위험한 관행과 제도적 미비 등이 지적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분석하여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단순히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에 대한 개선을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분야 기록정보의 생산·관리의 문제 역시 도출되어야 한다. 기록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집약된 기록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기록정보의 기원이 되는 업무수행 자체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에서 발생하는 기록정보의 생산·관리 체계 역시 합리성과 효과성이 부족한 채로 작동되고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개선지점을 찾아야 할 사항들을 일부 예시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표 1〉 세월호 참사 관련 해양안전 영역 기록정보체계 분석대상

구분	세부 내용
A. 원안·과정	A-1. 선박 안전점검이 어떤 주기로, 어떤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고서로서 작성되는지, 점검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는지
	A-2. 항적 데이터세트의 종류는 무엇인지, Raw데이터 획득 및 선박운항 종합통제 업무는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현재 진본성이 확인되는 데이터세트는 무엇인지
	A-3. 출항 이후부터 침몰 종료까지의 선박 기록 및 승객 기록의 종류와 Raw데이터, 현재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B. 구조 수습	B-1. 침몰사고 직후 신고·보고(공유)체계 작동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정보들은 무엇인지, 그 내용은 신뢰성 있게 전달되고 얼마나 보존되는지
	B-2. 현장출동과 초동대응 / 대책본부의 지시사항과 현장의 실제 구조 수행은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결정되고 기록정보로서 유통되었는지
	B-3. 침몰사고 전반에 대한 지휘통제권의 설정 및 작동은 어떠한지, 이를 증빙할 기록정보는 무엇인지
	B-4. 참사 직후 피해자(가족) 수습·지원 등에 대한 대처는 매뉴얼화 되어 있었고 적용되었는지
C. 보고·환류	C-1. 과거의 유사한 경험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실제 보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정보들은 무엇인지
	C-2. 이번 참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 및 의견제시,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과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효과적인지

반면 일부에서 주장된 것처럼 관련 기록정보의 위변조 및 폐기나 적법한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비협조¹⁴⁾가 있었다면, 이는 분명히 지적하고 후속 법적 절차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자체가 현행 법규 위반이면서 문제사항의 개선을 방해한 적폐적 행위이다. 인천지방해양청이 청해진해운에서 정원과 재화중량을 변조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해 세월호의 증축을 허가해 주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¹⁵⁾,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일지를 위조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을 삭제했다는 보도¹⁶⁾,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직원들이 세월호 선박과 세월호 사고 경위 등이 담긴 문서를 파기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보도¹⁷⁾가 있었는데, 이는 형법의 공문서위조, 증거인멸 및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기록물 무단폐기에 해당된다. 더 나아가면 해양 안전관리 기관과 해운업 관리기구 전체 기록정보의 내용이 진본성 있게 획득되어 관리되고 있는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

14) 전진한, 앞의 글, 2014.

15) 감사원, 앞의 자료 중 2. 선박 도입 및 검사 분야

16) “진도VTS, 세월호 근무일지 위조·영상 삭제 확인”, 한겨레, 2014.06.30.

17) “세월호 문서 파기 해운조합 직원 3명 실형 선고”, 경향신문, 2014.07.30.

이 부분에 대한 개별 기관 및 국가적 차원의 기록정보관리 체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보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① 민간단체의 경우라도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 자체와 해당 기록정보의 생산·관리 방식은 공공법규의 기준을 반드시 준용하여 그 업무내역에 대한 설명책임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② 만약 해상교통통제시스템에서 항적 데이터세트의 조작이나 무단과기가 가능하다면 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사 추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③ 이러한 개선사항이 실행되면서 정기/부정기적으로 확인·통제할 수 있는 내부 전담인력 및 외부 모니터링 집단¹⁸⁾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지점 분석 및 실행을 통해 재해·재난 및 해양안전 영역 전체와 그를 뒷받침하는 기록정보관리 분야가 상호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업무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기록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양질의 기록정보를 잘 생산하게 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원래 만들어진 1차적 가치와 다양한 활용에 사용될 2차적 가치를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무슨 기록정보가 어떻게 생산되어야 하는지, 어떤 활용방식이 가능하고 효과적인지, 기록정보관리 원칙과 해당 영역의 목적 및 응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18) 외부 모니터링의 주체로 상정될 수 있는 기관이나 집단은 다양하겠지만, 필자는 ‘공공데이터 공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오픈 API의 확대 및 보완’이라는 구상을 해보았다. 다만 이는 본 연구의 목적과 다소 벗어나기에 차후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4. 기록하고 잊지 않기

세월호 참사가 다양한 관련자들이 관계된 사회적 사건이기에 관련 기록정보 역시 매우 다양한 출처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 표 2는 관련 기록정보들을 발생 시기 순으로 배열해 본 것이다. 이 장에서는 표 2 중에서 앞 장에서 다루지 않은—현재의 공공기록정보관리 체계에 포괄되기 어려운, 별도의 기록화 활동이 고민되고 실천되어야 할—추모기록과 피해자기록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표 2〉 출처별 세월호 참사 기록정보의 내용과 특성

출처	주요 기록정보 내용 및 특성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해진해운 • 해운업 관리기구 • 해양 안전관리 국가기관 	-평시 및 침몰사고 당시의 세월호 및 해운 관련 사항 -민간·공공 조직에 산재 -(전자)문서, 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통신데이터, 증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족) 	-침몰사고 당시 관련 사항, 참사 전반에 대한 감정(일화) -개인기록의 특성 고려 필요(사생활 보호, 교차 비교) -사신(私信), 일기(비망록), 증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본부(관련 국가기관) • 언론 및 개인 미디어 • 자원봉사자 •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침몰사고 직후부터 참사 ‘종료’시까지의 활동 사항 -다양한 세부 출처에서 발생 -(전자)문서, 웹자료, (탐사)보도, 후기, 성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자 개인 및 단체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추모 사항 -물리적 규모 방대, 현재 소장위치 전국 각지 -추모글, 르포르타주, (전자)이미지, 구술, 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감사원 등 1차 조사기관 • 특별조사위원회 	-침몰사고 및 참사 전반의 원인, 과정 조사 사항 -국가기구에 의한 공식 기록정보 -보고서 및 관련 데이터	

어떤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를 추모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수집한 기록정보인 추모기록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기록은 아니다. 그러나 추모기록의 집합적 의미는 증거적 가치보다 더 오래 시민들에게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애도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한 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치유가 될 수 있다.¹⁹⁾ 추모의 끝은 잇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기록은 침몰사고의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와 같은 인적 피해자와 재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평상시와 사고시 및 사고 이후까지 해당 참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모은 기록정보를 가리킨다. 구조대 기자의 SNS메시지, 생존자의 증언과 근황, 사망자의 유품, 가족대책위의 회의록, 외상·심리치료일지, 재산피해내역 등 침몰사고 자체를 직접 겪은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다양한 사실과 감정을 담고 있으며 다른 출처의 기록정보들보다 개인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록정보들은 진상규명과 문제 개선에 직접적인 기반 자료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개인적 사건을 갈무리하고, 반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모, 회고, 반성이라는 감정을 일회적으로 흘리가게만 두지 말고, 저수(貯水)하여 활용하는 것 자체 역시 교훈을 얻는 방법이다. 다만 출처의 범위가 다양하기에 해당 기록정보의 생산자, 관련자들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사 초기부터 사회 일각의 분야별 전문가 및 기록정보관리 전문가 일부가 관련 기록화 활동 자체의 필요성과 의의에 주목했으며 실제 참여를 시작하였다. 이 움직임은 전국적 범위의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 네트워크’와 대부분 피해자가 집중된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월

19) 이현정,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보존방법 안내」,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보존 워크숍 자료집, 2014의 일부를 재구성함.

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로 발전하였다.

이중 전자는 진도, 안산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시민분향소 등에서 일어난 개인적·집단적 추모를 기록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현지의 시민사회단체와 기록학 대학원 등이 주축이 되었다. 또한 후자는 일반적인 추모 기록의 수집, 보존 외에 피해자 기록, 영상기록, 사진기록, 작가기록(르포르타주) 등을 포괄하여 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²⁰⁾ 해당 기록정보들은 그 유형, 범위, 규모가 방대하고 소유권 및 저작권 문제가 잠재되어 있으나, 일단 산일(散逸)되지 않도록 현재 사단법인 416가족협의회²¹⁾ 산하 416기억저장소로 수집되고 있다.²²⁾

한편 침몰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동분향소가 운영되면서 만들어진 추모기록의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분향소 운영일정, 추모기록 보관 및 사후 조치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²³⁾, 앞으로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역시 기록정보 관리 전문가들의 의견과 참여가 필요하다. 어느 특정한 공공기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이다. 오히려 국가기록원이나 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관은 기관의 주요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회적 사건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20) 해당 기록화 활동의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심성보, 「사회적 기록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2014년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 안병우, 「기록학의 확장과 아키비스트의 역할」, 한국기록학회 제100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2014; 2014년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의 홍영의, 김진열, 권용찬의 발표문

21)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http://416family.org/>> [인용 날짜: 2015. 2. 20].

22) 416기억저장소 권용찬 기록관리팀장 인터뷰.

23) “서울시 세월호추모공간 운영백서 발간”, 연합뉴스, 2015. 2. 15.

“인천시, 세월호 인천정부합동분향소 관련 기록물 영구보존키로”, 국민일보, 2015.01.16.

“경기도내, 세월호 임시분향소 36곳 ‘완전 철거’”, 뉴스1, 2015. 4. 1.

어떤 사회적 사건에 대한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을 수행하여 사회와 역사의 일면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기록정보 일체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한 곳으로 집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소장처에 나뉘져 있는, 원래 생산자와 목적이 다를지라도 특정한 주제에 관련되어 연계성이 있는 기록정보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인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록정보들에 대한 메타정보를 입수하여 전체적인 윤곽과 개별 기록정보의 물리적·지적 위치와 관계성을 표현하고 연계정보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관련한 상세한 방안 및 일정은 앞에서 언급한 정책과 계획이 체계적, 협의적으로 구상되면서 현실화 될 것이다.

5. 결론

기록정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뤄지는 인간활동의 산물이며 그 활동내역을 반영한다. 한편, 기록정보는 활동의 반영이자 증거이지만 모든 활동이나 그로 인한 산물 자체는 아니다. 기록정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자동적으로 관리되지는 않으며 목적의식을 가져야 생산·관리된다. 무엇을 어떻게 왜를 염두에 두지 않는 관리는 기계적인 보관에 그치고 그 자체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 수 있다.

지난 시기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여겨지지 않으며 해당 사건의 기록정보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²⁴⁾ 또한 과거사위원회 활동 과정 및 결과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²⁵⁾ 이를 일부 정부 관계자들의 태만이나 실수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기록정

24) “대형 참사마다 발간된 백서, 먼지만 쌓여있었다”, 시사인 제348호, 2014. 5. 16.

25) “대법 ‘과거사위 결정, 증거 미진하면 번복 가능’”, 연합뉴스, 2014. 12. 18.

보관리 체계의 부실과 모범적 실무 정착의 한계로도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와 기록정보관리 분야가 문제해결 방향과 역량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정보관리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저절로 증명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적극적인 결함 및 조력은 1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고 공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2차적으로는 특정한 분야의 기록정보가 더 잘 만들어지고 활용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전문적인 역량과 감정을, 가장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 기록공동체의 지혜와 노력을 모을 때이다.

ABSTRACT

The social role of record information management for Sewol ferry disaster

Kim, Jin Sung

This study suggest the social role of record information management for Sewol ferry disaster on sea near Jindo-gun at April 16, 2014. Social each part and the discrete member be going to carry out the social role for the disaster so that record information management part may be gather, operate, provide related record informations.

Record informations is ways to reflect, to supplement about something and means to effect it. They naturally generated though automatic managed, it need to purposeful activity. From finding to lack, to remedy a problem, Korean society and record information management part shall be reinforcing directions and competency of the solution with various angles.

Practical union and assistance of record information management part for Sewol ferry disaster, at first it be a help to recognize officially evidence for the accident. Secondary it producing and using better than current state of the area's record information part. Finally it may be actively comprise and implement our competency and emotion.

Key words : The sinking of Sewol ferry, Chonghaejin Marine Corporation, safety inspection, disaster countermeasure, 416commission, evidential value, record information generate & management improvement, memorial record, victim record, social documentation